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62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주진우·엄태영·박준태

우재준・김상훈・김승수

김종양 · 이성권 · 곽규택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형사사건의 고도화·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충실한 공판·송무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40명, 2026년에는 40명, 2027년에는 40명, 2028년에는 50명, 2029년에는 50명을 각각중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법률 제 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2,292명"을 "2,51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220명 중 40명의 증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40명의 증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40명의 증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50명의 증원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50명의 증원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 | 제1조(검사의 정원) |
|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 | |
| 의 정원을 <u>2,292명</u> 으로 한다. | <u>2,512명</u> |